

□ 호중구감소증 예방에 사용하는 G-CSF제제인 'pegfilgrastim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의 보험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경과규정 관련 질문 및 응답]

질문: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pegfilgrastim, 이하 뉴라스타)의 예방적 사용이 가능한 '유방암에 adjuvant TAC 요법'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던 환자에서 새로운 cycle에 뉴라스타를 예방적으로 투여할 경우 급여 인정이 되나요?

답변: 뉴라스타 투여 시 급여 인정되는 12개 요법을 이미 투여받고 있던 환자의 경우에는,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법이기 때문에 뉴라스타 급여 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cycle에서 뉴라스타 투여 시 보험급여가 인정됩니다.

예) 뉴라스타 등재 이전에 유방암으로 adjuvant TAC 요법을 1 cycle 투여 받은 환자의 경우, 뉴라스타 등재 이후 2번째 cycle부터는 예방적으로 뉴라스타를 투여 시 급여 인정됨.

[추가투여 관련 질문 및 응답]

질문: 뉴라스타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중구감소증 또는 발열성 호중구감소증(febrile neutropenia)이 발생한다면 추가로 G-CSF 제제(filgrastim, lenograstim)를 투여할 수 있나요?

답변: 뉴라스타는 filgrastim의 long-acting 제형으로 약 3주간 혈중농도가 지속되는 제제이기 때문에, 뉴라스타를 예방적으로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또는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G-CSF 제제(filgrastim, lenograstim)를 추가로 투여하지 말도록 가이드라인

에서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cycle에서 filgrastim 또는 lenograstim의 추가 투여는 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유방암으로 adjuvant TAC 요법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뉴라스타 투여에도 불구하고 호중구감소증이 나타났다면 추가적인 G-CSF(filgrastim, lenograstim) 투여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음.

※ 가이드라인에서는 예방적 G-CSF 투여에도 불구하고 neutropenia가 발생한 경우 다음 cycle에서 chemotherapy dose reduction 또는 treatment regimen change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